

WTO/DDA 수산보조금 제35차 협상결과

- 제35차 WTO/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10월 15-16일에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음
 -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9월 회의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한 수정 제안서 (TN/RL/GEN/150/Rev.2)를 인도네시아가 제출하였는데,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

■ 협상 주요 결과

-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, EC, 일본, 뉴질랜드 등 주요 수산국들은 인도네시아 제안서가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그리고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
 - 미국, 중국, 호주, 칠레 등은 제안서가 상향식(Bottom-up) 형태를 가짐으로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함
 - 또한 일본, 대만, EC는 양식어업을 수산보조금 범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건 (해상조업수산물을 먹이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)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함
-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부정적 효과 개념의 적용에 대하여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
-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9월회의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수정 제안서에 대하여 찬반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, Bottom-up 지지국가들은 구조에 대하여 환영하면서 부분별 특정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음
 - 반면 피시프렌즈그룹(FFG)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제안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들에 대하여 비판함

■ 국가별 입장

- 노르웨이
 - 인도네시아 수정제안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우려할 내용들도 있으나 매우 관심을 끄는 요소들도 있음
 - 금지보조금의 경우 범위와 예외가 문제인데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

나, 조치가능 보조금 항목을 두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이는 기존 ASCM협정으로
도 모두 조치가능하기 때문임

- 개도국 특별대우 범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아니하나 공해어업에 대하여 보조금
을 지급하는 것은 우려함

○ 호주

- 금지보조금에 어선의 건조, 현대화, 운영비를 포함한 것은 환영하나 여러 가지
예외가 필요함
- 인도네시아 수정 제안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ASCM 협정 조항을 활용하였음에
도 불구하고 동 제안서 내용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충분함

○ 중국

- 인도네시아 제안서가 금지보조금에 비중을 둔 것은 인정하나 Bottom-up 접근이
Top-down보다 협상목적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임
- 개도국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소규모 연안어업, 입증 책임, 부정적 영향, 이행조
치,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

○ 대만

-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나 금지보조금 범위가 너무 넓고, 특히 어업활동관련
변동 및 고정비를 모두 금지보조금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
- 효율적 관리제도가 있는 경우 어업활동보조금은 과도어획이나 과도어획능력으로
연결되지 아니함

○ 칠레

- 개도국 특별대우의 각 조항의 내용과 조건이 중복되어 삭제 또는 정리할 필요가
있음
- 수산자원에 부정적영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에
적용한 것은 현실성 없음
- 따라서 Top-down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이자 실행이 가능한 방식임

○ 한국

- 홍콩 위임사항(mandate)을 보면 기존 협정의 기본개념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규
율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, 기존 ASCM 협정상 금지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으로
인해 무역왜곡효과를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는 보조금임으로 수산보조금 협상에
서도 보조금과 자원고갈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함
-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어업비용보조금의 경우 적절한 자원관리하에서는

- 과잉어획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므로 금지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함
-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TAC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하에서는 어떤 보조금도 과잉어획을 야기 시키지는 못함
- 조치가능보조금의 경우 기존 ASCM협정으로도 규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제안서는 복잡하고 모호한 조치가능 보조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
-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적용은 선·개도국 모두에게 적용시켜야 함

○ 뉴질랜드

- 인도네시아 수정 제안서는 DDA 위임사항(mandate)에서 부여한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이자 실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매우 환영함
- 통보조항은 Dark amber(피해를 입히는 국가가 입증책임을 가짐)로 사용되어야 함
- 뉴질랜드는 언제나 매우 강력하고 실행이 가능한 규범을 선호함

○ 유럽연합

- 보조금의 범위에서 양식업 제외 조건을 명시한 각주에 문제가 있음
- Top-down 방식도 경우에 따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인도네시아의 제안서는 Bottom-up 임에도 어업운영비를 포함하는 등 금지보조금 범위가 너무 넓어 반대함
- 개도국 특별대우는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
- 금지/허용(green)/조치가능(amber) 등은 투명성에 달려 있는데 ASCM협정에도 통보관련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보를 검토한 효과적인 기관은 없었음

○ 일본

- 어획능력과 어획노력을 감안하여 금지와 허용보조금을 분류하여야 하는데,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함
- 양식업을 조건부로 수산보조금의 규율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곤란한데 이는 대부분의 양식이 해면채취어류를 사용하므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함
- 어선건조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한 것은 환영하나 어획능력을 50%이상 줄이는 경우 금지대상 제외하여야 함
- 개도국 특별대우와 관련하여 공해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어선에게까지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조치임

○ 캐나다

- 금지보조금 부활 등 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감사하나, 아직도 모호한 내용으로 이행가능성에 어려움 있음

- 개도국 특별대우 관련, 소규모어업에 대해서는 선·개도국 모두 적용하여야 하고, 영해 및 EEZ로 한정해야 함

○ 미국

- 금지보조금 중 어업운영비(operation cost)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유류, 먹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가 더 넓은지가 의문임
- Bottom-up 접근방식은 어업 기반시설이 제외되는 등 예외가 너무 많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른 접근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
-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 같아 우려스러움
- 부정적 효과와 상계관세조치 조항 관련, 어족자원의 정의 및 피해결정에 대한 내용도 없이 어떻게 어족자원 개념이 상계관세조치와 관련시켜 질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움
- 수정 제안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협상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임

<조정희, jcho5901@kmi.re.kr>